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51
----------	------

발의연월일 : 2021. 2. 2.

발 의 자 : 고영인 · 김민철 · 최혜영
이용빈 · 허종식 · 김두관
최종윤 · 전용기 · 전해숙
강득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가 없으나,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예외적인 규정임.

한편,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자가 다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가중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자질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재차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등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안 제8조제7호 및 제65조제2항 단서).

다.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

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율 추가함(안 제65조제2항 본문).

마.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금지함(안 제
65조제1항제2호의2·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65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재교부하지 못하며, 제8조제7호에 해당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3. 제1항제4호·제6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4.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
 5.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간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

교부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은 제외한다)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면(제65조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제1항제2호의2·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 및 제65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p> <p>1. ~ 3. (생략)</p> <p>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p>	<p>제8조(결격사유 등)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p>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2. (생략)
<신설>

3. ~ 6.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선(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

1. -----
----- 다만, 의료 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 6. (현행과 같음)

② -----

-----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

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재교부하지 못하며, 제8조제7호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3. 제1항제4호·제6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4.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

5.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
 부장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
 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 10. (생략)
 ② ~ ⑥ (생략)

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은 제외한다)에
 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

 -----해당하면(제65
 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